

2004년 특별 학술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CPbl.8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주최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

2004년 특별 학술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2004. 12

-
- 주최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

■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

한국 과거청산과 토론회 집회와 모임으로 속편

21. 1. 6. 03

한국 과거청산과 토론회
집회와 모임으로 속편

〈1차 토론회〉

■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발 표 : 김동춘 (성공회대)

토 론 : 윤해동 (서울대 강사)

일 시 : 2004년 10월 28일

〈2차 토론회〉

■ ‘친일’ 문제의 인식

발 표 :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 론 : 송경아 (소설가)

일 시 : 2004년 11월 4일

〈3차 토론회〉

■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발 표 : 박경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토 론 : 허영춘 (유가족대책위)

이창수 (새사회연대)

일 시 : 2004년 11월 11일

〈4차 토론회〉

■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발 표 :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 론 : 강성현 (역사학연구소)

일 시 : 2004년 11월 18일

목 차

1.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 김동춘	11
2. '친일' 문제의 인식 / 김민철	27
3.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 박경석	47
4.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 이영일	63
5. 한국민주화운동 – 이념적 특성·역사적 형성·현재적 과제 / 송병현	95
6. 종합토론	113
7.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경과보고	151

제5차 토론회

■ 한국민주화운동 – 이념적 특성·역사적 형성·현재적 과제

발 표 : 송병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토 론 : 정지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일 시 : 2004년 11월 25일

■ 왜 지금 과거청산인가 – 과거청산의 방향과 지평의 확장

사 회 :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토 론 :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서우영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윤해동 (서울대 강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일 시 : 2004년 11월 27일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1차 토론회>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발표 : 김 동 춘 (성공회대)

토론 : 윤 해 동 (서울대 강사)

때 : 2004년 10월 28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인간사회의 정치적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 주체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분명히 가해의 사실과 책임 주체 규명,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과거청산인 이유는 분명히 과거는 ‘지나갔으며’,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된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정치, 법, 제도, 그리고 과거사의 책임자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공공질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서훈과 포상, 처벌과 구제, 새로운 역사서술 등이 주로 왕조 혹은 정치권력의 교체 과정에서 반복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전쟁, 혁명, 쿠데타 등의 사건과 더불어 공권력의 행사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은밀해졌으며, 과거의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포상과 처벌 이전에 진상규명이 우선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즉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처벌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과거청산에서 진상규명은 현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데서 가장 일차적인 작업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청산은 주체와 권력의 성격에 따라 인민재판 등의 ‘거리의 정의’(street justice)와 같은 보복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

스페인의 사례처럼 과거의 잘잘못은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개인의 책임 문제는 완전히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총괄 사면’(Blanket Amnesty) 같은 방식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폭력의 죄과를 가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여부와 방식,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의 방식 등은 새로운 정권의 담당주체와 이행기의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거청산 작업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의 성격에 직접 좌우되고 어느 사회나 구세력이 계속 정치사회적으로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갖 명분을 들이대며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난관이 부딪치거나 무산되기도 하고 과거청산이 급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위기에 몰린 구세력이 이것을 빌미로 새 권력을 아예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다.

한편 과거청산은 역사적 정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단순한 ‘역사해석’과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법적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반인륜, 반인권적인 사태의 진실을 캐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환경과 가해의 주체를 밝히고, 피해의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다. 과거사의 공로와 잘못에 대한 판정 혹은 역사해석은 일단 과거의 진실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전제하에, 공동체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과거의 사실을 재해석하고 그전에는 미처 주목받지 못했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여 교훈으로 삼는 일을 말한다. 즉 과거청산은 정치적, 법적 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판정과 해석 작업은 특정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학자들의 고유하게 추진해야 하는 임무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과거청산을 독립된 연구소 등이 주도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청산에 정치적 이해의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과거청산을 역사해석 작업으로 왜소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과거청산은 주로 과거의 국가 혹은 공권력 범죄를 다루는 일인데 가해의 주체인 국가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못하고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고해성사를 유도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발을 격려할 수 없다면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가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강

한 한국에서는 책임소재를 대중들에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인적인 청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낸 나라에서 5.18의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18 학살을 가능케 했던 법과 제도의 청산에 소극적인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 하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 등 남북 적대와 분단을 지탱했던 법, 제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제도와 환경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책임성을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권력의 텁니바퀴 아래에서 대단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을 지나치게 매도하게 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청산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찢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2. 과거청산의 중요성

이처럼 국가의 잘못된 권력행사를 가능케 했던 조건의 변경 및 직접적 원인의 제거, 책임 주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공권력 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때로는 원한을 품은 피해자가 파괴, 사적인 복수의 형태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 물론 보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연장시킬 위험성이 있다.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만이 공권력 범죄의 반복 혹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서 사회적 화해(reconciliation)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진상규명, 처벌과 명예회복, 구제와 포상 등으로 이어지는 과거청산의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기본 방향 수립이며, 국가주도의 조직적인 국민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정치집단의 이해에 종속되어 추진 혹은 좌절될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의 행동을 장려하고 다른 행동을 억제하는 위험성이 있다.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은 민족을 배반하고 파시즘에 동조했더라도 반공의 노선을 견지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며, ‘반공’의 이름을 빙어한 반사회적 행동도 용인될 수 있다는 국민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전후 독일에서 나치 협력 세력의 숙청은 독일이 유럽에서 또다시 패권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일본에서 미국이 일급 전범들을 살려준 것은 일본의 정치나 사회가 또다시 우경화의 길을 걷도록 격

려해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오늘날 우경화의 물결 속에서 비록 독일에서 신나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는 하나, 독일이 다시 여타 유럽국가를 침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일이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시대의 과거와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1945년 이후 천황제 부활, 전범에 대한 불처벌, 과거사 부인은 왜 오늘의 일본이 새롭게 우경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즉 유럽은 통합의 길로 나서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군비경쟁과 민족주의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바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일본 자신이 그리고 여타 나라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의 차이에서 궁극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는 반민특위 실패의 그늘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의 독일과 일본 역시 전후 전범 처리라는 과거청산의 그늘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 과거를 청산하는 것 역시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역사 만들기, 국가 만들기, 국민 만들기, 법과 질서 만들기 작업이다.

전쟁 혹은 국가폭력은 국제사회 혹은 국내 정치공동체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새로운 질서로 거듭 날 때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 가해 책임자의 단죄 등 법적인 처벌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다. 즉 국가 범죄의 재발과 복수의 반복을 막기 위해 분명한 과거청산이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갈등의 극복, 즉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언제나 억압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으며, 정치권력은 반대자를 없애기 위해 종족 적인 차이, 인종적 차이, 종교적 차이,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균열의 공간을 언제나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체제는 그러한 유혹을 전면화 시킬 것이다.

특히 법적인 죄책과는 별도로 다카하시 데스야(高橋哲哉)가 말하는 '응답 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은 바로 사회 내에서 신뢰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즉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건인데, 만약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의 사실이 규명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권력과 사회의 신뢰성은 확보되기가 어

렵다. 설사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가해와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들 간에 만들어진 정치 사회적 관계의 틀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웃에 고통을 안겨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치 않을 때, 양국이 새로운 갈등이나 전쟁에 돌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의 진정한 평화는 구축되지 않을 것이다.

즉 중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죄'의 개념이 수립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유지 활동이며, 최상의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통치 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고, 또 동료 구성원을 살해한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버젓이 살아있거나 심지어는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여타 구성원은 침묵으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맷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책임 있는 주체로 행동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파괴, 사회의 파괴이며 아렌트(Arendt)가 말하는 판단력의 마비상태이다. 이 파괴, 혹은 판단력의 마비상태는 결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가 건재 하는지 파괴되었는지는 그것이 법과 절차,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가를 보면 안다. 그리고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었는지 건재 하는지는 정의의 수립 여부 즉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처리되는 방식,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안다.

공권력의 행사에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구성원의 이반 즉 사회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생과 사가 자신의 의지 밖에 있는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정의의 부재, 혹은 판단력의 마비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은 결보기에는 유례없는 사회통합의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극도의 불신을 수반한다. 특히 전쟁 중 감옥이나 포로수용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며, 상대방이 한 눈을 팔면 남의 물건을 그냥 훔쳐가는 등 극도의 무정부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때로는 사회 전체가 이 포로수용소의 확대판인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지는 않는다. 사회가 해체되었을 때, 즉 누구

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정의의 기준을 세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나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사회해체의 징후가 드러난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의해 상처를 안게 된 사람이 그 상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 상처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회에서 인간간의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의 규명을 통한 정의의 수립은 사회해체를 막을 수 있는 해독제가 된다.

남아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가해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악이나 심리적 문제점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야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며, 역사정치적 환경(냉전, 반식민주의, 인종주의), 구성원이 복종함으로써 도덕적 자제력을 마비시키도록 하는 집단의 영향, 집단적 규범의 내면화,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언어들의 기여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은 그 목적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즉 과거의 국가폭력과 국가범죄 사실과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들이 공개되고, 피해의 사실들과 피해자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사회 내에서 타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러한 고통을 가져온 배경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가졌던 무관심과 공포에 대해서도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진실의 규명과 그것을 공론화하는 작업은 바로 고통을 공유하여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 '자신만의 것'으로 가슴에 묻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최소한 사회, 혹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수립하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국가폭력의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은 일종의 사회적 정신치료, 국가적 정신치료가 부를 수 있다. 개인의 병과 달리 사회의 병은 진실과 정의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Healing with Truth). 물론 이러한 정신치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곁으로 사회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건강성, 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과 규범, 도덕률이 밑으로부터 무너진 상황이 초래된다. 용서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용서는 진상의 규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 자행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 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3. 한국 과거청산에서 '과거'의 성격과 범위

과거청산은 분명히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주민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피상적으로 보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로 국한된다. 이후에 발생한 모든 국가 폭력, 학살, 고문, 의문사 사건 등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의 특성 상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을 뿐더러 국가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이전의 문제를 과거청산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부일협력자 문제를 살펴보면 당시의 한국 백성들의 고통은 식민지 상황, 주권의 상실, 책임 있는 공권력의 부재라는 상황이 초래한 것으로서 식민지 체제를 극복, 청산하려는 이후의 독립된 국민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민족 구성원이 고통을 당한 사실, 고통당한 사람들의 실태와 규모, 그리고 그러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의 분단,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군사정권의 등장,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의 시절을 반세기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임무를 등한시하였다. 한일 협정과정에서 일제하 강제동원이후 사망, 혹은 피해를 입은 조선인의 고통을 몇 푼의 청구권 자금으로 무마했으며, 추후 개인 보상의 길을 막았으며, 피해 실태와 규모에 대한 기초조사 조차 게을리 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의 국가로서의 기본 임무를 방기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일협력자 규명 문제는 그들이 반공을 무기로 이후 지배층이 되면서 사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핵심적 과거청산 과제이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협력하여 동족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 죄과에 대해서는 해방당시의 시점이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당사자가 거의 사망하였으며,

그들에 의한 피해 역시 민족 구성원 개개인에 국한된다기 보다는 국가, 민족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단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민주, 반인권적인 외세 파시즘에 부역했는지 밝히고, 그러한 행위가 이후 60년 동안 한국역사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규명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개인에 대해 OX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식민지 협력의 양상을 보여주고 생계형 친일과 출세형 친일을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들의 역할과 이후의 모습 등을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군, 경, 준군사조직의 민간인 살상, 혹은 여타의 반인도적인 가해 사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거창, 노근리, 제주 4·3 관련 명예회복, 진상규명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쟁 정리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은 남북간의 분단 및 대한민국의 존립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인 사태역시 그냥 미루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 책임자 규명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억울한 피해의 모든 정황을 밝혀내고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나 유사 전쟁 상황이 도래할 경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 이후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한 바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의문사, 피해 사건을 축으로 하여, 각종 간첩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 범살(法殺) 즉 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그 수사 및 형 집행과정이 극히 심각한 의혹을 갖는 사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시기의 과거청산 문제와 달리 여기서는 각종의 공안기구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차적으로는 군과 경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 중에서 광주 5·18 관련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의 과거청산 작업에서는 제외될 것이며, 80년대 민주화 관련 의문사 사건 역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주화와 무관한 각종 의문사로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 문제는 현재의 권력구조 및 지배질서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며 가해자

가 대부분 생존해 있거나 현직에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억압기구로 군림해왔던 공안기구가 진정으로 국민의 보호자로서 거듭나고, 민주주의를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해보면 과거청산의 범위는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사로 인한 피해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해석이나 판단이 요구되는 과거의 모든 사건이 과거청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의 사실이 분명하고, 가해의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기는 넓게는 동학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학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고, 문민정권 이후의 공권력 피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92년 노태우 정권까지를 잡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 여기서 일제시기 같은 경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지 않을 수 없고, 한국전쟁기 같은 경우는 미국 측의 자료협조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군정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국가주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생한 공권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는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처럼 북한 인민군, 혹은 중공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혹은 피해 문제 역시 과거사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일제시기, 미군정기처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그에 관한 자료를 갖지 않고 있으며 또 일차적으로는 책임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 이용자료나 생존자들을 통해서 피해의 규모나 피해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관련 자료 조사는 이후 해당 국가와의 협조 하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과거청산’의 내용과 원칙

앞에서 과거청산은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과 배상, 각종 기념사업 위령사업, 역사교육 등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판정과 해석의 일부¹⁾가 넓은 의미의 과거청산의 뜻이기는 하나 과거청산은 역시 진상규명을 초점으로 할 수

1) 여기서는 친일진상규명과 같은 부정적 판정, 민주화 유공자 선정과 같은 긍정적 판정이 있다. 이러한 판정 작업은 국가의 보훈, 포상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

밖에 없고, 진상규명이 없이는 다른 모든 작업은 진전될 수 없다. 따라서 진상규명 작업은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작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서 보았듯이 진상규명은 고립된 피해자의 가해 상황과 가해자를 밝히는 데서 그칠 경우 가해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고, 따라서 가해환경의 규명과 확인작업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책임의 뜻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과거청산에서 처벌 문제는 언제나 논란거리다. 하급관리의 행동은 대체로 상급자의 명령이나 묵인 하에서 이루어졌고, 상급자는 상황의 논리 혹은 정치적 환경에 부응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해체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최고권력자 혹은 상황논리에 기대어 면죄부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계통없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을 분명히 단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일단 최상의 명령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청산이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 자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해자가 그것을 반복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상정되어 있는 과거사 관련 법안 중에서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 처벌을 거친 다음의 정치적 사면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오히려 ‘사회적 처벌’이 더욱 바람직하다. 즉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에도,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물어서 그러한 잘못된 권력행사에 부역할 경우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특히 처벌문제로 정치 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더 이상 간첩, 혹은 좌익의 명예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그 동안 연좌제 등에 의해서 공권력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보상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고, 또 다루기도 어렵다. 공권력의 잘못이 시인되는 경우 피해자들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적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 의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진상규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거청산에서 이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 진상규명- 후 보상, 배상 원칙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차원의 보상은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 개인차원의 보상은 공권력 피해로 인한 우선의 물질적 궁핍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차후에는 당사자나 사회 전반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청산 작업 전체의 정당성을 허물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는 작업에도 큰 짐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불철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보상이 요청되는 경우 결정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상규명이후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징적인 보상 정도로 마무리하거나, 경제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보상, 치료 교육비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대 이후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 중의 상당부분은 진상규명 작업을 생략한 채로 명예회복, 보상으로 나아간 경우가 많다. 거창사건 및 노근리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근리 사건의 경우처럼 이미 명예회복 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조사와 진상규명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위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창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건 해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 두 사건은 당시에는 여러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했으나 당시의 특수정황, 유족들의 끈질진 노력 등에 결부되어 사실상 ‘특권’이 된 역사적 사건들인데, 이 사건의 해결이 다른 사건의 해결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청산 작업의 형평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

기념사업, 역사교육은 과거청산의 마지막 수순이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서 스스로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념사업 역시 과거사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일한 비중을 갖는 역사적 사건들이 차별적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념사업 역시 앞의 보상 문제와 마찬가지

로 형평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단순한 정부 행정업무의 하나로 될 경우에는 아무런 정신이나 의미를 담지 않는 의례적인 행사로 그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기념사업은 우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각 기념사업 주체와 기관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사업과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중앙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기념사업이 과거 사실을 박제화하거나 공로자에 구리 옷을 입히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당면 사회적 의제들과 소통을 해야 하며, 민간의 전문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해석, 그리고 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친일법안, 민주화 보상 법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가장 역사적 평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의 논의와 성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현재 민주화 보상 법안 관련 시행세칙 마련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바로 권위주의 통치의 성격 및 그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해석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계속 논란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그동안의 극우반공체제와 성장주의가 친일, 민주화의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공간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주 4.3 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과도한 형태의 처벌적 판정, 반대로 과도한 형태의 '유공자 인정' 모두 과거청산의 기본 정신과는 배치될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친일의 기준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서적 반감에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과 행적을 밝히고 지금의 시점에서 그 과오의 역사적 의미를 따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공자 인정 역시 피해자의 요구가 거세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며,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별로 부담 없다고 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공권력 저항자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역시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입해야 한다. 처벌과 보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이 법적인 차원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 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기본 모형은 뉘른베르크의 승자의 패자에 대한 처벌 방식과 남아공화국과 같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하여 화해를 초점에 두는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승전국의 정의가 패전국에게 강요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 후자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문사위원회의 경험은 후자에 가까운 것이지만 처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와 통하는 바가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포괄적 과거청산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종합적인 것이 될 것이다. 친일진상규명, 민주화 보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편에서는 역사적 평가, 해석의 차원도 있지만, 주로는 오래된 사건이고 의혹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법적 정치적 처벌이 아니라 거시 역사적 교훈을 줌으로써 사회적 처벌의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또 다른 양상을 지닐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과거청산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최대로 하고 처벌은 배제하고, 보상은 신중하게 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과거청산의 주체와 기구 문제

과거청산의 주체는 과거청산의 방향을 좌우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현 정치권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립적인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자가 주체가 될 경우, 과거청산은 보복적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한풀의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청산 작업에 가해자들이나 그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주도를 하거나 그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그 작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4.19 당시 발포 책임자 처벌이 무산된 것, 제주 4.3 위원회에 군 관련자들이 들어와서 조사 작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은 것도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청산에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는 두 집단이 개입해 들어올 경우,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역사적 의미가 반감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의 야당이 경계하는 정치권 주도의 위험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과거청산도 정치권력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즉 정치적 힘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과거청산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중립적인 조직이나 기관이 나설 경우에는 법적

인 뒷받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도덕적인 청산, 즉 역사적 평가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순수 민간, 중립적 민간인사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과거청산 자체를 맥 빠지고 무기력한 작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합심하여 입법안을 마련하되 수행과정에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민간이 개입하여 전체의 일정을 조정하고 진상규명, 처벌과 보상, 기념사업 등이 국가와 사회의 먼 대의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문사위의 경험은 민관 합동기구의 성격을 갖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간첩의 군 장성조사” 공격이 보수언론에서 제기되면서 민간 측 조사관, 위원 참여에서 상당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이후의 위원회 구성 시에도 개혁적 시민단체 관련자가 참가할 경우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중립성 혼란을 강조하면서 구성 자체에 대해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정당 간의 적절한 지분 나눠먹기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 문제를 평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이 선임되어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과거청산 관련 기구가 중복, 난립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지만 향후에 구성될 과거사 위원회는 가능한 단일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 통괄할 수 있는 상위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과거 가해자의 방해를 막고, 피해자의 요구를 적절히 제한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위원 및 조사관의 선발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 기구의 활동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미진한 것은 이후의 다른 조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를 주 임무로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일단락되면, 이후의 과제는 주로 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역사해석, 역사교육작업은 이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2차 토론회>

‘친일’ 문제의 인식

발표 : 김 민 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송 경 아 (소설가)

때 : 2004년 11월 4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친일’ 문제의 인식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I. ‘과거청산’과 ‘친일문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거청산은 크게 두개의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식민지하의 친일문제로 매국행위와 식민지지배체제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 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과 한국전쟁,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문제이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불법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문제로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국가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여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이란 역사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친일문제’는 과거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사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책임 추궁이라는 측면에서도 친일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다른 형태의 책임 추궁의 성격도 갖고 있다. 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책

1) 과거청산의 방법에 대해 역사가 볼프손(Welffsohn)은 4W(Wissen[앎], Werte[가치], Weinen[슬퍼함], Wollen[의지])를 제안한 바 있다.(송충기, 「전후 독일의 탈나치화와 재교육」 대구사학회 2002년 학술대회 「과거의 부담과 대면하기」, 2쪽.) 즉 과거청산이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그 행위를 악한 것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하고, 희생자를 위해 최소한 상징적으로 슬퍼해야 하며, 다른 좀더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책임 규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식을 통해 과거청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무엇이 일어났는가(진상 규명) 2) 그때 일어난 일이 옳았는가 틀렸는가(가치) 3) 피해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슬퍼함) 4)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지) 5) 일어난 일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책임 규명)”

임을 물을 것인가, 묻는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친일문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학습효과를 얻을 것인가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난 해 말 이후부터 몇 가지 우연적인 사건을 계기로 친일문제가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문제가 사회화(대중화)되고 정책과 제화되는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많은 사안들이 대중화될 때, 극단적으로 단순화되면서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무시되거나 아예 외면당함으로써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반드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친일문제가 안고 있는 복잡한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정치권의 문제와 결부시켜 특정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친일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최악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누구누구 아버지가 면서기를 해서, 순사여서, 금융조합 서기를 해서 친일파더라’는 식의 황색저널리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폭로성 기사와 논리가 인터넷 매체를 타고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처럼 친일 문제가 졸지에 홍신소 직원을 동원해서 족보 캐는 식의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경우도 있다.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고, 친일파 문제가 대중화되면서 빛 어지는 시행착오의 과정일 수도 있고,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것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친일문제에서 이런 식의 논의는 철저하게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 데에는 친일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친일파 하면 이완용, 이완용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친일행위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완용이 왜 독립협회 초대회장에서 ‘일한병합’ 조약 체결자로까지 변신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그렇다. 학교 선생에서 만군의 장교로,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개발독재자로 변신한 이유를 그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무력한 것은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친일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논자들의 지적처럼 도덕주의적 역사관은 사태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

고, 대중의 카타르시스에는 일조할 수는 있으나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주장 역시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이글은 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실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II. ‘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조와 주체, 행위와 책임의 문제

친일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는 친일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이 담겨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잠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 참사가 일어나자 언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당사자인 김씨(실직한 가장으로 정신질환)
- B.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기관사 자신의 피신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동’
- C. 사령실의 상황 판단 미숙과 안이한 근무태도
- D. 경영합리화와 비용 감축으로 2인 승무제가 1인 승무제로 변경, 상황실의 인원 부족²⁾
- E. ‘불쏘시개통’의 전동차와 지하철역 구내의 건설구조 시스템³⁾
- F. ‘이번 사고의 진정한 범인은 안전 조치로 인해 늦어지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조급성과 이런 조치를 규제나 불편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과 생활문화에 있다’⁴⁾

A~C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주체)의 문제에서 추궁하고 있다. 다만 B와 C

2) 『한겨레신문』사설

3) 『중앙일보』사설 2003년 2월 19일

4) 원희복 지방자치부 차장, 『경향신문』2003년 2월 26일

는 관리상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D~F는 사회(구조)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즉 IMF로 승무원을 감축하려 했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른바 고통분담)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냈더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단지 각자가 알아서 베티도록 강요받았다. F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조급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서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참사에 대해 우리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A 역시 마찬가지이다. A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IMF ← 실직 ← 삶의 무게와 정신 질환 ← 사회 불만 ← 방화. 그렇다면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킨다면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과 책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인(주체)과 사회(구조)를 분리해서 사고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실상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관계성의 문제이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 팔호닫기와 팔호열기의 훈련이 필요하다.⁵⁾ 개인의 책임을 말할 때는 사회 문제는 팔호 안에 넣어 두어야 한다. 반대로 사회 문제를 말할 때는 개인의 문제를 팔호안에 넣어두자. 그런 다음 팔호를 벗겨 보자.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더 나은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곧 책임 문제에서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위의 궁극적인 책임은 행위를 ‘결단’한 당사자에게로 귀속된다. 만일 책임을 사회(구조)로 돌린다면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5)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해선 가라타니 고진의『윤리21』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그는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과 윤리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할 때는 인식이, 실천과 책임을 규명할 때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천황제와 천황의 책임에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황 개인이 아니라 그 구조가 문제고,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천황 개인을 인간적으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 하지만 구조론적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책임은 팔호 안에 넣어야만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심리’, 또는 그 후의 다양한 천황제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경우 그 팔호를 벗겨내지 않으면 안된다.”(153쪽)

“우리는 전쟁책임의 문제를 그저 선악의 도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인식이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윤리적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론적(구조론적) 파악에서 개인은 구조의 항목에 놓일 뿐 주체일 수 없다. 주체는 실천적(윤리적인) 위상에서만 나온다.”(171쪽)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를 낳게 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구조의 문제로 돌리려는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 참사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회로만 돌릴 수도 없다. 각자가 져야할 책임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결해야 할 방식 또한 여러 층위로 나뉠 수 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 책임의 유형도 나누어진다. 앤스퍼스에 따르면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형이상학적 책임이 있다.⁶⁾ A가 법률적 책임의 당사자라면, B는 실무상의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적 책임의 당사자이고, C는 관리 감독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성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찰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동일시할 경우, 우리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주체와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주체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책임의 주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오류를 종종 범하곤 한다. ‘모두가 죄인이다’는 말은 곧 ‘모두가 무죄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⁷⁾

6) 칼 앤스퍼스,『責罪論』(‘우리에게 죄가 있는가-독일의 자기비판’이라는 제목으로 1948년에 잡지 <<유럽>> 8호에 실림) 가라타니가 정리한 것을 요약해서 인용한다.

1) 형사상의 죄이다. 이것은 전쟁범죄-국제법 위반을 의미한다.(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 2) 정치상의 죄다. 이것은 ‘국민’ 일반과 관계된다. “근대국가에서는 누구나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적어도 선거 때 하는 투표 기권을 통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정치적으로 물어지는 책임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누구든 이를 피할 수는 없다.……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정당한 근거를 들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에서는 그러한 변호가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앤스퍼스가 말하는 ‘죄’는 ‘책임’이라는 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문제가 나온다. 즉 파시즘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혹은 ‘재앙을 간파하기도 하고, 예언하고, 경고도 했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로부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또 행동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런 말은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3) 도덕상의 죄를 말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무죄지만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경우다. 가령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면, 반대해야 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할 때가 그렇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해야 할 일(당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독재권력만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을 지지했거나 혹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4) 형이상학상의 죄를 말한다. 강제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죄책감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이유에서, 마치 자신이 그들을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죽은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이러한 구별은 불가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책임’으로 동일시되고,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후에 일본 황족 출신의 수상이 라디오에서 ‘일억총참회’를 주창했던 때가 그런 것이다.(『윤리21』, 131~133쪽.)

7) 이영훈교수의 위안부 발언 파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를 범했다는데 있다. 즉 일본제국의 범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의 일본 정부와 위안소를 드나들었던 한국인 병사의 책임을 동일시한 것이 잘못이었다. 또 한가지 친일문제에 대한 이영훈교수의 발언에 담긴 역사의식도 문제이다. 즉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교수는 도덕주의적 역사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공리주의적 역사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도덕주의적 역사관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2. 친일의 유형과 책임의 종종성

이제 친일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친일 행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반민족행위 - 매국, 독립운동 탄압(군, 경찰, 밀정) 등
- ② 반인륜행위 - 고문, 학살, 위안부 제공 등
- ③ 부일협력행위 -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근대화 문제와 결부), 침략전쟁에 동조한 행위(정도의 문제제기, 자발성과 강제의 구분 문제) 등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을 다 포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책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17대 국회에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정할 때, 행위 이외에 지위 규정을 넣은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친일(행위)의 유형과 책임에 대한 관계를 잘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다.⁸⁾

규정		친일반민족자	부일협력자	규정	예시	규정제한
책임의 범위		형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목적적 친일행위자	직업적 친일행위자	○	○	○	항일운동 세력 고문·살해자 / 밀정 / 매국행위자 / 중추원 참의 등	당연 해당 (제한 없음)
	자발적 친일행위자	△	○	○	주임관(고등관) 이상 관리·군인	선택 해당 (적극 활동자로 제한)
결과적 친일행위자	수동적 친일행위자		○	○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 항민화운동, 침략전쟁을 선전·선동한 자 등	
	기능적 친일행위자			○	일제에 의해 동원된 지식인 및 유력자 등	
				부일 협력자	관임관 이하 관공리 등	

러나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적 역사관 속에는 '좋고'(good) '나쁨'(bad)만 있지 '옳고' '그름'은 없다. 인간의 행위,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옳고 그름이 배제된 역사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부당한 체제를 인정하는 지배계급의 역사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8) 한상구, 200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발제문)

여기서 ①과 ②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옳지 못한 행위라고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③의 부일협력 행위이다. 근대 국립국가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근대화가 좌절되고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 근대화가 주도되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식민지 지배체제가 장기화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 부일협력 행위는 친일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어려운 지점에 해당하기도 하다. 복거일의 친체제파론이나 안병직의 일상사론, 윤해동의 회색지대론이 모두 이 지점을 두고 친일 청산논쟁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복거일의 주장부터 보자.⁹⁾ 그는 친일 행위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조선 총독으로부터 식민 통치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만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친일 행위는 강요된 것이었기에,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아닌 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십수 년 전부터 '일제하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다' 따라서 모두가 무죄다'는 주장을 펴면서 친일파를 변호하던 그가 좀더 세련된 어법으로 '공범론'을 펼치고 있다.

그가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에는 중요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다.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에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사회(시대적 제약)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부당하다. 구조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시대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제약된 구조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동기와 관계없이 묻게 된다. 만일 복거일식의 주장대로라면 독립운동을 한 조선인들에 대한 고문과 여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서 '종군 위안부'로 만든 행위만을 친일 행위로 규정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한 행위 역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일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를 냥고 만다.

다음으로 독일의 일상사를 친일 문제에 적용한 안병직의 주장을 보자.¹⁰⁾

일상사 연구는 기존의 나치즘 연구가 나치즘의 억압성과 대다수 국민들의 체제순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정

9) 복거일, 2003, 「죽을 자들을 위한 변호-21세기의 친일문제」, 들린 아침.

10) 안병직, 2002, 「과거청산과 역사서술-독일과 한국의 비교」『역사학보』제177집.

권의 강압적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방식에 있다고 하였다. 즉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사생활에 몰입한 것이 나치의 집권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식민지에 도입한 안병직은 ‘어떻게 35년간 일제식민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물으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대로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일상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일상적 삶의 긍정적인 면모에 주목하는 역사서술을 일제시대를 가장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친일청산 문제와 직결된다. 즉 친일행적의 규명과 심판을 통해 식민지 시대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30여 년이 넘게 지속된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책임을 소수 친일세력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독일의 일상사 연구에 대한 그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 그의 지적처럼 나치즘에 대한 일상사 연구는 나치즘체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곧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으로 ‘일상사 연구가 지엽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그림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현재의 자신의 일상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가치 지평을 확보해야 한다’¹¹⁾는 포이케르트의 지적은 일상사 연구의 철학을 응변하고 있다. 이것은 나치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병직의 일상사는 성찰과 반성의 이름 아래 식민지배의 친일문제를 대중의 책임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 식민지배 권력에 편입된 한국인 관료와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의 책임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집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찰과 반성은 모두의 몫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에 대해 굳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지식집단의 친일행위에 대해 적극 비판한 위에서 일상사의 전망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그 논의의 진정성과 엄격함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배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를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삶이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체제 유지와 일상이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연결시켜 논리의

11)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2003,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8쪽.

비약을 범하고 있다. 삶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된다는 주장이 성립 가능 한가. 설령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굳이 식민지배체제에만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 나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체제와 일상을 연결시키려면, 체제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는가를 밝히는 과제가 요구될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와 식민지 인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윤해동의 주장은 보자.¹²⁾

그의 글은 많은 시사를 주긴 하나 매우 난해해서 우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우 투박하게 친일문제에 대한 그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식민지 주민의 일상 삶은 저항과 협력이 혼재하는 회색지대이다. 그리고 회색지대는 식민지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공영역이 위치하는 지대이기도 하다. 2)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친일 문제는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도덕적 단죄라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협력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식민지배의 모든 협력 행위는 적든 크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¹³⁾

나는 친일문제를 정치적 협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윤해동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협력 개념을 통해서 친일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까. 친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윤리적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협력 개념이 제국주의의 지배구조와 식민지 주민의 대응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유효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를 협력이라 할 것이며, 자발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협력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행위의 주체자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책임 또한 다를 것이다. 모든 구조는 권력의 연쇄체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는 권력의 연쇄체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위치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다르고, 책임 또한 다를 것이다. 공출을 독려하고 지휘한 군수와 말단에서

12) 윤해동, 1998,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 2004, 「친일과 반일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기」, 『우리 안의 이분법』, 생각의 나무.

13)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와 식민지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는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의 문제이다. 그런데 윤해동은 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굳이 식민지에서만 회색지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이 회색지대일 수 있다. 적절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근대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공영역의 혜택모니를 둘러싸고 식민권력과 식민 주민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성립되는 지대라고 말하는 것이 어실체에 가깝지 않을까. 다만 식민지의 경우 식민권력의 주도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집행한 면서기가 져야할 책임의 뜻과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권력의 구조를 밝히지 않을 경우 친일 문제는 직접 동원된 사람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친일 문제는 친일의 구조-식민 지배체제 하에서의 협력구조-를 밝히는 일과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할 수 있다.

그런데 친일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책임이란 궁극적으로는 행위의 당사자가 져야할 뜻이지,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져야할 주체들이 사라진 지금에 와서 친일파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현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야 한다.

III. 친일청산 반대론 비판

친일청산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논지는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적 대중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비판한다.

1) 친일 진상규명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친일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것을 덮어둔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드러내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에 있다. 즉, 친일문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자. 갈등 해결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은폐하거나 힘으로 눌렀다. 이제는 새로운 경기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며, 이 경기에는 상호 존재(가치)의 인정과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적인가. 현실은 이성이 개입될 여지도 없이 날카로운 적대적 대립과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대화의 소통도 막혀있다.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이 누려왔던 부당한 특권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개혁이라 한다면 친일 진상규명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특권화된 기억을 민주화하고 객관화시키는 일에 친일진상규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히 총력전이라 할 만큼 최대한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중동과 문화일보가 연일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저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미뤄둘 수만은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지자체에서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대개 친일행위를 했거나 독재체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차원에서 치열한 역사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전통적인 지방지배권력(문화권력)층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반대에 부딪혀 국고 지원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있어 기념사업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지배네트워크가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역 단위에서 기억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념사업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마산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노산기념관과 조두남기념관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마산을 대표하는 문학관과 기념관을 짓기로 시와 시민단체와 학계가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역문학관, 지역음악관 건립을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과를 이후 부시장이 다시 부정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셈이다.

2) 민간연구소에 맡기자. 또는 사회에 맡기자.

이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의 주장으로 국가책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과거청산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생략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기억화를 부정하는 학자층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근대국민국가가 기억(역사)에 대해 전유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억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기억을 전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은 기억의 주체로서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기억의 주체가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시다가 말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론에 동의한다. 그는 기억을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의 의미 또한 규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집합적 기억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합적 기억은 일단 형성되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적 틀이 되어 개인의 사고를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집합적 기억, 즉 지배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대항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집합적인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개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집합적 기억의 주체를 단지 유기적 일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합적 기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하자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집합적 기억에서 기억의 선택은 권력상황의 특성에 따라 강한 규정을 받는다. 그것은 집합적 기억의 주체, 즉 집합체 내부의 중앙과 주변의 관계에서나 그 집합체와 외부의 관계 모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상황에서 우위에 선 사람(즉 강자)들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선택하여 그것을 권력 상황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다.”¹⁴⁾

국가는 기억을 전유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억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해체하지 않는 한 성립불가능하며, 또한 실천적이지도 못하다.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한 집합적 기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보수세력이 집합적 기억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특권화한 것을 해체하고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즉, 한강의 기적에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난장이’에 대한 기억이 공존해야 한다. 근대여성교육의 선구자라는 김활란의 기억 속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학생들의 기억도 같이 공존해야 한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기억 속에 베트남주민의 고통과 고엽제 환자의 기억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사회의 자율성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곳곳에 보수세력의 권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기억의 재구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환기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한 주체가 되어 역할

14) 石田雄, 2000, 「記憶と妄覺の政治學」 明石書店, 머리말.

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국가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치공동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무정부주의나 국가주의의 극단에 빠지지 않고 개선 가능한 제도로서의 국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족이지만 친일청산문제에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즉 1948년 제헌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만든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주범이 바로 무장한 국가권력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으며, 그것은 당대의 국가가 져야 할 임무를 계승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물론 그 임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축소되었겠지만.

IV. 자성

1. 도덕적 우위에서 빚어진 오류¹⁵⁾

친일과 청산을 주장할 때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서 친일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나중에 태어난 자의 특권’으로 앞시대를 비판하지 말자는 하버마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즉 ‘내가 만일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엄정한 가능성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과거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도덕적 규탄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대적 정의와 동일시해서 선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집단적 죄(우리 모두의 책임)라든가 시대적 상황으로 책임을 돌리는 주장 또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죄는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의 문제이고, 분명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벌되거나 역사적인 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 셋째, 과거의 정치적 판단상 범한 오류나 당시의 기회주의보다도 현재의 반성을 더 중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양심의 가책을 말한다.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분은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의 실마리라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문화이고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 테제는 나 역시 일제시기에 국내에 살았다면(역사적 조건) 친일파 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주체의 행위)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15) 김민철, 2002, 「친일과 청산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역사비평』2002년 여름호

는 도덕적 심판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며, 친일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의 양민학살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참전군인이었다면(역사적 조건) 나 또한 양민을 학살할 수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주체의 행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친일파에 대한 잘못된 전제

-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친일파 문제를 도덕 차원으로만 한정, 도덕적 교훈 이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따라서 허무한 논쟁)

- * 속마음까지 친일적으로 사고했으리란 인식(민족주의의 부작용,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을 무시, 친일파라 하더라도 민족차별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

3. 현재의 대결의식이 과거의 평가로까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경향 - 조선, 동아의 친일문제, 부당한 조선일보 공격(이봉창 의사가 아닌 범인이라는 기사 시비, 친일신문이었기 때문에 범인이라 했다는 주장, 현재의 비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오류)
『삼천리』의 '김일성 匪徒' 기사가 뜻하는 것

4. 해방 이후의 정치적 선택과 해방 전의 친일 문제 : 진영론의 관점

도덕적 비난이나 폄하가 아니라 당대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당한 평가와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역사의 균형을 찾아자 한다. 특히 지식인이나 민족주의 우파의 경우 과거에는 민족주의자로 과대포장된 것을 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친일 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어 오히려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는 현재의 갈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한 만큼의 평가와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의 소통이 열릴 것이다.

친일 문제와 현대사 : 친일파→친미파→분단·독재세력(산업화) 구조적·역사적 인식

① 친일문제→협력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작업

② 해방 이후의 정치투쟁→신념의 문제,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문제. 이 과정에서

빚어진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할 것인가(계급적·이념적 중요의 시대)

친일파 문제도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1945년 이전으로 끊어야 한다. 해방 이후로 연속시킨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좌파를 선택한 친일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군과 경찰 문제는 물리적 폭력기구·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넣을 것이다.

V.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에서 기초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채택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조사·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부역행위에 대한 조사만큼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지위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반민족행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막았다.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병기하여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였다.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제3국(인)의 항일에 대한 방해나 탄압도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던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민족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 부문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상조사→심의→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현행이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

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있어 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보호에 관한 조항과 침해시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의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1)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위'를 추가하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고등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행정관료), 소위(군), 경시(경찰) 이상을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하였다. 고등관 이상 간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했다고 판단된다. 즉 단순한 '생계형 친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지위에 따른 처벌 규정은 미군정기 입법의원이 제정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와 제헌의회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서는 물론 4월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의 '나치즘 및 군국주의 청산법', 일본의 '공직추방령', 프랑스의 '국치죄 도입에 관한 1944년 8월 26일 명령', 중국 국민정부의 '처리한간조례(處理漢奸條例)' '정치한간

조례(懲治漢奸條例)'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2월 25일에 제정된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제4조(顯著한 反民主行爲 摘制)'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하여 9개항에 걸쳐 반민주행위자를 적시하였고, 이 법에 따라 624명이 자동으로 공민권을 제한당했다. 즉 해당되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며, 이 가운데서 일부는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은 행위로만 책임을 물을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고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고문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문을 기획·명령한 것 이외에도 묵인·방조한 상급간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권력의 위계체계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 추궁이다. 개정안에서 지위를 보완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바로 이런 철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의식하여 경찰 해당자를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몫이해가 아니면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를 돋기 위해 경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식민지기의 경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910년대 헌병경찰체제 하에서는 경시가 경찰서장에서부터 도경찰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으로 군인인 현병이 치안일선에서 후퇴하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문관경찰을 대폭 증원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는 판임관이었던 경부가 대거 증원되면서 이들의 직급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경부 중에도 고등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즉 1920년대 이후의 경부는 판임관급과 고등관급이 섞여 있다. 개정안에서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려면 경찰의 경우 '경시와 고등관급 경부'라 하면 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경시라 예를 들었다. 따라서 고등관에 해당하면 경부라 해도 당연히 지위의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경부 이하 조선인 경찰 가운데 고등계 형사와 밀정 등은 직무 또는 행위상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업무상 다양한 민사기능을 가진 경찰을 일률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할 수 없다. 다만 조사와 심의 후 그 죄질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시라는 규정은 지위범으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하급 경찰에 대한 면죄부 조항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소위 이상 지위범 규정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보면, 일제하 군장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과시즘 전시체제 아래 장교는 그

권한과 위세가 지금에 비할 바 아니었다. 조선인 장교는 만주군관학교 또는 일본육사 출신으로 일제를 위해 전공을 세워 출세를 하겠다는 적극적·자발적·직업적 친일행위자이며,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정과 독립운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국의 장교이기도 하였다.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황군 장교를 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키는 사안으로 시끄럽다니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문제가 된 현명 오장(하사관급)은 고등계 형사나 밀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과 경찰은 직업적 친일의 전형으로서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기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3차 토론회>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발표 : 박 경 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토론 : 허 영 춘 (유가족대책위)

이 창 수 (새사회연대)

때 : 2004년 11월 11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박경석¹⁾

과거청산과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

역사는 수많은 사회적 기억에 대한 투쟁의 성과물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시대에 따라 여러 힘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인상(image)으로 변화하고 재해석됨으로써 기억할만한 가치를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재구성된 과거의 기억은 시대를 따라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과거는 단지 활자와 기록을 통해 만나는 차가운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뜨거운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이라는 시기를 겪으며 한국 사회는 굴절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권 주체들에 의해 과거사실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왜곡되고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한 편에서는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소모적인 국가 정체성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나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용인하고, 그리워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국가폭력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역사적 기억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많은 방해에 부딪치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과 부역자들의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절되었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낳은 한국전쟁의 비극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침묵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정권에 맞

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전문위원, (前)위클리솔 편집장

서 투쟁하다가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죽음 또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어 버렸다.

이는 잘못된 과거에 의해 탄생하고 그 기반 위에 정권을 유지해 온 부패한 세력들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어 과거를 바로 세우고 역사적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된 과거의 지배 구조 속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향유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은폐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고문과 투옥, 테러와 폭력에 희생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결국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노력은 그들과의 지난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피와 땀으로 힘겹게 만들어온 역사적 노력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과거청산이라는 작업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교정하는 학술적 차원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정신의 발현인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는 응분의 심판을 받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냈으므로써 과거의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의문사를 밝혀내는 일은 단지 민원인들의 쌓인 원을 해소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작업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약 1년간에 걸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고 진상규명의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본 글이다. 이 글은 필자가 2기 대통령보고를 위해 정리했던 위원회의 활동성과와 2기 위원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면서 경험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한계성을 정리해 놓은 김희수 1상임위원의 글을 모아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글이다. 따라서 내용 중 일부는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발표될 위원회 보고서와 이 글 간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2기 위원회의 공식보고서가 이 글의 입장에 우선함을 밝힌다.

1. 활동성과

1기위원회는 조사권한 부족과 관계기관의 비협조, 조사시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기위원회 역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거나 모의실험을 해보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외국의 법의학·총기 감정 전문가들을 찾아 직접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반인권적인 고문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실제 상황을 연출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롭고 중대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기관은 물론 문교부나 일선 대학, 교정기관, 심지어 재소자나 일반 사병들까지 폭력과 인권침해에 동원하는 체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까지 불법적인 행위에 끌어들인 것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1) 군, 부재자 투표 관련 사망사건 은폐 조작

위원회는 198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군사독재정권이 군부통치를 연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에 보안사가 개입하여 이를 은폐·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정연관 사건이 그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노태우 후보에게 권력을 이양하려 하였으나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호헌철폐·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굴복한 정권은 6월 29일 마침내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고,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는 정반대로 선거는 집권여당에 의한 불법과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 과정에서 1987년 12월 4일 군 부재자투표 때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중이던 정연관 상병이 구타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방부와 보안사는 정연관의 죽음이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교육중 발생한 단순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사건을 축소하였다. 헌병대는 수사결과 이 사건을 '군 부재자투표와 관련 없는 단순구타 사고'로 내용을 조작하였다. 위원회는 다수 참고인에게서 "당시 중대장이 국회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여주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압박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결국 보안사와 군이 정연관 사망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질 경우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한 조작과 은폐를 자행하였음이 드러났다. 아쉬운 것은 조사과정에서 군의 추가적인 조작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사시한으로 인하여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2) 반인륜적 사상전향 공작의 실상

위원회는 유신정권 시기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와 좌익사범에 대한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하였고, 좌익사범과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1973년 8월 6일 대전, 대구, 광주, 전주교도소에는 전향공작전담반이 구성되었다. 전향공작 전담반은 형식적으로 법무부 산하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보부가 주도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제출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 따르면 '전향심사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시키고 내용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가 입수 분석한 좌익재소자들의 전향 관련 기록들은 어김없이 중앙정보부 지부와 협의하라는 교도소장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도소내에 구성된 전향공작 전담반에는 폭력사범 및 일반 재소자들이 참여하여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향을 강요하였다. 전향공작은 좌익사범이나 비전향장기수 외에도 경미한 반공법 위반자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의 경우 활동 초기엔 대화를 통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자 폭행고문을 가하는 방향으로 선호하였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고문은 조직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른바 2 대 1 공작은 폭력사범 2명이 들어 있는 사방에 좌익수 1명을 집어넣어 가혹행위를 하는 방

식을 말한다. 바늘 수백 개가 박힌 침목으로 온몸을 찌르고, 물고문·고추가루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가하였다. 여기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제한하고, 병치료를 해주지 않으며, 가족을 동원한 심리적 회유가 더해졌다. 생명권 박탈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단식을 통해 항거하였으나, 이에 대해 살인적인 강제급식 방법이 동원되었다. 강제급식은 주로 교도소 내 격리사동에서 진행되었는데, 고무호스를 목구멍을 통해 위장까지 집어넣고 강제로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얹지로 부어넣음으로써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원회는 1974년 대전교도소 수감중 사망한 좌익사범 최석기, 비전향장기수 박용서, 대구교도소에서 1976년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손윤규가 바로 전향공작 과정에서 이러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학문의 전당 대학, 강제징집에 적극 가담

2기위원회는 김두황, 최온순 등 강제징집 관련 사망자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대학당국의 학생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백47명에 대한 강제징집 조치가 이루어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20여개 대학으로부터 약 6만쪽 분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지 못하였는데, 특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직접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자료제출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시절, 청와대, 국방부, 문교부, 병무청, 경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진리와 양심, 도덕 등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당국조차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었다.

강제징집 조치는 1970년대 초반 유신정권부터 시작되었으나, 19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에 의해 학원통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되었다. 강제징집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이들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것을 말한다.

1980년 당시에는 청와대와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5인 위원회'가 학원통제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문제학생'들을 처리하였는데 학생이 기소상태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하한 뒤

입대시켰고, 치안본부 대공분실과 안기부 등에서는 연행된 상태에서 바로 강제징집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당국은 단순한 협조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시국사건 관련 학생들이 강제징집 될 수 있도록 곧바로 학사징계 조치를 내리고, 집회·시위에 연루된 학생들의 성향을 꼼꼼히 분류해 정계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던 것이다.

문교부는 당시 학생처 강화, '문제학생'의 지도·평가, 집회·시위 차단 등을 뼈대로 하는 '학원대책사업추진계획서'를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특히 교수 면담이나 학부모 상담으로도 선도되지 않는 '지도불능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또는 직권휴학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입영대상자는 휴학 즉시 입영 조치, 비입영대상자는 학교 관계인이 협조지도'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은 우선 학칙에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직접 휴학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권휴학 조치' 조항을 학칙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1년에 두 차례씩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를 열어 문제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보고하여 정부 방침을 전달받았다. 또한 학생처를 중심으로 일일상황 보고와 문제학생 동태파악 등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안기부와 보안사, 경찰, 문교부 직원 등 이른바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위한 운영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4) 정부합동대책반의 조직적 노동운동 탄압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 9월경 정부는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 가입 노동조합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탈퇴유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 노동부, 안기부, 치안본부는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를 접촉하여 설득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탄압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민주노조 추진 핵심인물에 대한 내사를 통해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을 적용하여 적기에 사법처리함으로써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 아래 노동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협의회 등 법외노조 추진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보고 '심리전' 차원에서 교육·홍보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동대책은 지금까지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로 남아 최근 배달호, 김주익 등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살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위 문서의 노동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91년 의문사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안기부의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회유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시청이 한진중공업에 요구한 업무조사가 사실은 안기부와 노동부의 업무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박창수를 구속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악용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박창수가 사고현장인 병원 옥상으로 갈 때 동행자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5) '망원' 활용한 보안사의 사찰활동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기관과 대학당국에 의해 강제징집된 병사들은 보안사의 불법적인 감시와 고문·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위원회는 1983년 군에서 의문사한 최온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전방사단에 배치된 강제징집자(특수학적 변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병들을 망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안사는 강제징집된 병사들에게 강압적인 정신교육과 고문, 가혹행위 등을 하면서 프락치활동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소속부대의 선임병이나 분대장 등을 돈이나 휴가로 회유하여 강제징집자들의 서신이나 서적 등을 검열하고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보안사 간부는 당시 봉급의 4분의 1을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고, 특히 '망원'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2만원씩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제징집자에 대한 감시는 보안사뿐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가 입수한 당시 사단 지휘관의 지휘서신에는 '특수학적변동자 선도'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고, 이를 지휘한 연대장의 수첩에도 일선 대대급까지 군부대가 운동권 출신 사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과정에서 최온순을 비롯하여 강제로 징집된 병사들은 보안사와 일선 지휘부까지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문과 프락치공작을 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 결국 사병이 동료사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깊은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6) 안기부의 '대학 길들이기' 공작

위원회는 이철규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관련자의 「업무일지」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안기부가 조선대 비운동권 학생들이 이돈명 총장을 고발하도록 공작을 하여 진보적인 성향의 이돈명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돈명 총장 외에도 조선대의 진보적인 교수들에 대한 퇴진 공작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의 「업무일지」 6월 21일자에는 '이돈명 총장 취임후 조선대가 혁명기지화 되었으므로 이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의 성분과 추천, 선출 배경을 조사할 것'과 '반대파인 박철웅 전 총장과 잔존세력의 고소, 고발, 폭로작전이 가능한지, 그 공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의 안기부 차장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또 다른 첨보 보고 문서에는 '그동안 유보상태인 이돈명 총장의 해임 문제를 기소 분위기와 결부, 종결 처리하는 등 적극 대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안기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기부는 1989년 4월 조선대학의 교지인 『민주조선』을 수사하였는데, 이는 이돈명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원회는 『민주조선』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 본부 차원에서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치안본부, 문교부, 보안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단위의 대책회의 속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사인규명

1975년 8월 17일 야당 정치인 장준하의 시신이 포천 약사봉 밑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가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큰 외상과 골절이 없는 사체의 상태는 곧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검안소견서가 공개되면서, 장준하의 사체가 기존에 알려진 장소에서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이 장준하 사건의 중요한 의문점이었고, 이에 대한 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체 및 지형 모델링, 이를 활용한 추락사고의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먼저 추락지점으로 알려진 벼랑을 3차원으로 실제에 가깝게 구성하고, 추락시 충격량과 충격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상 인체모델을 구성하여 12가지 자세로 추락시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자세마다 인체가 받는 충격량과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충격량에 따른 상해정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초 장준하의 사체사진 및 검안소견서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경우 두부에 3회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11가지 경우는 가슴에 찰과상, 10가지 경우는 가슴에 골절, 9가지 경우는 둔부, 팔, 다리에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장준하의 사체가 검안소견과는 달리 추락지점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과학적 조사기법인 컴퓨터 추락시뮬레이션 실험결과에 의하여 장준하의 추락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사인규명 작업은 30년이 지난 오래된 사건을 단지 관련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고문범죄 재현과 피해자 공개증언

고문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고문은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색출·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화 세력에게 가혹한 폭력과 고문을 가하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고문이나 폭행과 같은 과거 일제와 군사독재의 망령은 크게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폭력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종원 사건의 경우 1985년경 이른바 서울대 '민추위' 사건에 따른 고문수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질 때 생긴 대표적인 의문사이다. 우종원은 1984년 10월경부터 '민추위' 산하 홍보위원회의 대외유인물책으로 활동하다가 수배되어 1985년 10월 12일 충북 영동의 한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민추위' 사건은 서울대 학생운동씨클인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깃발」이라는 유인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후에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에 대한 고문과 박종철 고문치사 등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2기위원회는 2004년 4월 13일, 우종원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악명 높은 일제잔재인 고문수사의 실체를 밝혀 고문수사 방지와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당시의 고문수사 상황을 재현하였

다. 고문수사의 재현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칠성판을 이용한 물고문, 통닭구이, 집단구타, 심리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행위 재현 등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2. 한계

1) 법령상의 한계

(1) 조사대상에서의 한계

1기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칙·간접적인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한정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국가 폭력이 개입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성 유무를 떠나 당연히 국가가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문사특별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으로 이를 한정 짓고 있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기 의문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동일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개정된 의문사특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조사미진으로 인하여 진상 규명불능 결정된 사건, 기각 결정된 사건 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만을 조사 할 수 있도록 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 사건이나 의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활동하였다는 근원적 한계가 있었음은 향후 과거청산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2) 조사 시한에서의 한계

의문사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2기 의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은 최장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출범기획단을 만들어 사전에 준비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선발 및 교육, 조사기록 분석, 조사계획 수립, 조사진행 중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등의 여러 절차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조사

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3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사건들을 조사관 1~2명이 8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도 향후 과거청산을 논할 때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조사 권한에서의 한계

의문사특별법은 1기 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었듯이 처음부터 조사권한상으로 본질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운 조건으로 구성된 법률이었다. 의문사특별법은 임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동행명령권이 있었으나 단지 과태료 부과 정도의 미약한 힘으로는 관련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게다가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권리주의적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의 개입 여부가 의문사 사건들의 대다수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에도 정작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 국가 기관들이 비협조를 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여 진상 파악을 하는 데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진상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소지인이 임의 제출하지 않는 이상 진상 파악에 필요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조사관으로 활용할 수는 있었으나 당사자가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여도 이를 제제할 수가 없었다. 향후 과거청산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이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조직 구성 및 활동에서의 한계

2기 의문사위원회는 1기 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조건의 조사관과 예산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예산상 행정자치부의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사관들이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팀문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등도 조사관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30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조사관 1~2명으로 조사를 한다는 조차 무리한 상황이었지만, 민간 조사관 중에서도 능력이나 자

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향후 과거 청산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고려되어야 할 점일 것이다.

2) 본질상의 한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들은 사건 자체에서도 본질적인 한계가 나타났다. 오랜 세월이 흘러 목격자 등을 찾는 것이 어렵고 설사 어렵게 목격자를 찾아도 그 기억이 희미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현장에서의 증거도 이미 없어져 버리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았으며 시체는 이미 처리되어 증거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사건 자체에서도 진상 파악을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은 만일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면 하여도 실질적인 진상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3) 관계기관 비협조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서 관계 기관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조사권한의 미흡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도 관련 기관들이 과거 청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도 보인다.

의문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진술과 근거 자료 등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여도 정보기관들은 자의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을 되풀이 하고, 심지어는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항까지도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 없이 태도를 돌변해 거부하는 등 국가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한계는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으며, 가령 기무사는 위원회의 강제징집, 녹화 사업과 관련한 실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는 보안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당시 사령관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전량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허원근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무사가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을 협조하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돌연 협조를 거부하는가 하면, 국방부 역시 김두황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근무한 사람들 명단조차 넘

겨주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체 핵심 참고인 자료를 넘겨주어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장준하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조사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야 겨우 일부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비협조 속에서 위원회가 실지 조사를 결정하고 국정원을 방문하였으나 국정원은 문서체계상 같은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발생된 자료와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가사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열람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공언해온 말과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기관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결국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참여정부의 기본정신과도 배치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과거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응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3. 맷음 말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1925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천황에 충성하는 충성 서약을 받고자 사상전향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정작 일본에서도 종전과 함께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1998년 사상전향제 폐지, 2003년 준법서약 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며 옥죄어 왔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진정한 과거 청산 없이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청산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벼롭 받고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6·2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한 체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조작된 사건들의 많은 실상이 아직도 어둠속 베일에 잠겨있고,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식들의 부모는 잠을 재대로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찌 단순한 과거의 문제라고만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밝혀진 진실위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용서하고 사면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래를 말할 수 있고,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해보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어설픈 진상 규명이지만 의문사위원회가 이러한 과거 청산의 기조와 방향 속에서 일해 왔고, 포괄적인 과거 청산으로 나가는 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 그 소임을 다하였다는 점은 후일의 귀감이 될 것이다.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4차 토론회>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

발표 : 이 영 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 강 성 현 (역사학연구소)

때 : 2004년 11월 18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인 학살 문제

-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정전이 된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흔은 분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아물지 않는 아픔과 함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민족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1945년 해방이후 1953년 정전이 되기까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기는 우리 민족이 처한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이 시기 남한에서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소위 '빨갱이'이라는 죄목으로 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되었거나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은 이러한 암울적인 학살문제에 대해 전쟁 중이었다는 상황 논리로 방치하거나 침묵으로 애써 외면해 왔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통한과 통곡들을 지난 반세기 동안이나 그토록 무책임하게 방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 민족의 양심은 존재하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대한민국은 과연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법치국가'라는 물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민족 양심 회복의 문제이며, 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가로 재는 사회적 잣대이며, 평화와 통일의 민족공존시대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첫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둘째,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라는 논제를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1) 학살의 배경과 성격

(1) 학살의 시대적 배경

1945년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명제를 들려싸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남한사회의 좌우의 세력간의 폭력적 대립구도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냉전질서 구도하의 물리적 지원에 힘입어 결국은 극우 친일세력의 주도권 확보로 귀결이 되었다.

당시 김구와 여운형은 대중적 영향력을 켰으나 국내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했으며, 김일성은 북한에서만 대중적 영향력과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극우 친일세력들은 민족적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떳떳치 못한 친일경력으로 또 다른 외세인 미국에 기대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구로 대표되는 자주적이며 통일된 국가 수립을 열망하는 대중들을 뺨쟁이로 몰아갔고, 미군정은 미국의 이해와 코드가 잘 맞는 이승만의 안정적인 집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반공단체를 동원해 통일정부를 열망하는 세력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중들을 제거해 나갔다.

이 결과 1948년 8월 15일에는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중도 좌우파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까지 완전히 배제시킨 이승만과 한민당이라는 극우세력 중심의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의 신생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8년 제주 4·3항쟁,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 등 여러 지역에서 남한 단독단선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투쟁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라는 외세와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하면서 全軍에 걸친 대대적인 肅軍작업을 서두르고 국가보안법 제정(1948. 12. 1)과 국민보도연맹원 결성(1949. 6. 5)으로 해방과 정부수립 공간의 정치적 대립을 정략적인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 초기까지 약 2년간의 남한 사회는 취약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지녔던 이승만 정부가 반공이념을 확대 강화해 나가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켜 권력 기반을 다져 나가는 시기였다. 1949년에는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가 미군방첩대(CIC) 요원이었던 안두희에 의해 살해

되었고, 1950년 봄에는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반민특위 등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국회내의 소장과 개혁세력들이 반공의 잣대로 숙청되었다. 특히 여운형의 피살(1947. 7. 19)에 이은 김구의 피살(1949. 6. 26)은 남한내의 정치세력 역학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단독정부를 지향한 이승만 세력과 통일 정부를 지향한 반이승만 세력으로 확연히 재편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치사회체제의 형성을 의미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경찰·우익단체들의 조직적인 반공활동과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 철저히 통제하므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2) 학살의 성격

한국전쟁 전후 학살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학살로써 여타의 학살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근대화된 국가권력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나찌 하의 유태인 대학살과는 성격이 다르고, 탈냉전기의 보스니아, 코소보, 르완다 등의 인종간 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인종이 타 인종을 청소(?)한 '사회적 학살'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전 당시의 학살은 미군과 한국군이 초토화 작전을 분명히 구사했으며 국가권력이 학살에 앞장서고 또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가진 유태인의 학살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유태인의 학살이 국가권력의 의도 하에 고도로 감정 중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데 비해 한국전의 학살은 정치투쟁, 계급갈등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단히 감정 개입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군인 등 무장세력을 필두로 상당수 사회 구성원이 학살 가담자이자 범죄자로서 가담한 르완다, 코소보 등의 학살이 인종 담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 반면,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이데올로기를 학살 정당화 담론으로 활용한 것이며, 좌우익으로 갈라진 한국인들 상당수가 학살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학살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인 모두에게 있었다기보다는 분명히 좌우의 국가권력 측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대별이 된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일본군이 만주와 남경 등지에서 저지른 학살과도 다르다. 두 학살 모두 국가권력에 의해 의도된 것이고, 초토화 작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또 국가권력이 시작한 학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보복이 반복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전자가 제국주의 국가가 이민족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발

생했다면 한국전의 경우는 국가 형성과정에서 동족간의 내전 양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앞의 유태인 학살이나 남경대학살은 모두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인종주의적 편견이 가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등 냉전하의 학살처럼 한국전 당시의 학살은 주로 동족인 한국의 국군과 경찰, 북한의 인민군이나 지방의 좌익에 의해 이루어져 흔히 학살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인종주의는 한국전쟁에 관한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광기가 사적인 보복과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t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전세계적인 냉전체제수립 과정에서 극우정권이 수립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 그리스, 베트남에서 발생한 학살과 가장 유사하다. 특히, 스페인, 그리스와 베트남에서는 전선의 계속된 이동으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불분명한 내전적 상황, 혹은 국내 정치폭력 과정에서 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경우와 공통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냉전질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우익 정권 수립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 미국 측의 적극적 학살 시행과 현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을 묵인한 점등이 학살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2) 학살의 규모와 분류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규모

한국전쟁을 전후로 대량학살이 발생하였으나 전쟁 당시 좌우의 양측에 의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는지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기록물 부족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학살의 규모는 1960년에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 노현섭 회장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들에 의해 한국전을 전후해 학살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113만명이다. 이 자료는 경남 25만명, 경북 21만명, 전남 21만명, 전북 19만명, 제주 8만명, 경기 6만명, 충북 5만명, 충남 3만명, 강원 3만명, 서울 2만명이 각각 희생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총살, 생매장, 참살, 수장, 기총사수 등 여러 가지 잔혹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때로는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또는 국가권력의 묵인·방조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렇지만 학살의 규모를 단순하게 양적인 문제로 계량화하거나 수치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인권사회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인권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더우기 현대는 마이카 시대라 하여 '개가 차에 치어 죽어도 개 값은 무는 형국'이 아니던가? 우리는 학살에 대한 숫자적 통계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시해야 할 것이다.

당시 남한 정부는 전쟁중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 수를 모두 128,936명(남자 97,680명, 여자 31,256명. 북한 30년사) 정도로 공식 추산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전라남도가 65,501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남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쟁전에 좌우 충돌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우익청년단원들이 살해되었으며, 대전, 전주, 원주, 서울 등지에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수백명에서 천여명 이상의 군인과 경찰 가족들, 우익 인사들을 인민재판 등의 방법으로 학살한 점이다. 그리고 유엔군의 진격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측이 수천명의 우익인사들을 원산, 함흥, 평양 등지에서 학살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치안유지단이나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빨간 물'이 든 사람이나 그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는 주민들 그리고 친일 전력을 알고 있어 자신의 입신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등이 모두 희생양으로 학살되었다.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그리고 미군에 의한 주민학살은 거창과 제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4.19 직후의 자료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약 1백만명의 민간인이 소위 아군이라 일컫는 남한 군경과 비정규무장대 및 미군 등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대략 분류해보면 제주도에서 약 3만명의 주민과 좌익인사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평택 이남의 전국에 걸쳐 발생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에 대한 학살은 가장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보도연맹 가입자가 33만 5천여명(서울 2만명)이었다는 진술(오제도, 선우종원)과 충북에서만 3천여명이 7월에 학살당한 것으로 보아(한지희) 전국적으로 최소 20만에서 30만명 이상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여순항쟁 진압과 토벌과정에서의 학살이 1만명(여수지역사회연구소), 형무소 수감자 4만~5만명, 유격대 토벌 과정과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죽은 이들이 20만~30만명, 미군 폭격과 기총소사의 희생자들이 1만여명 등이다.

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승만 정권과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은 1백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과 자료들이 최근 속속 발굴, 공개되고 있어 그 동안 정부가 인정한 제주와 거창 규모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민간인들이 이 시기에 학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민간인학살 사건의 성격

민간인학살은 유엔협약의 제노사이드(genocide) 정의중 "한 집합체 성원들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재생산 정지를 통해 직간접으로 그 집합체의 신체들을 멸한다는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항복 또는 위협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속행되는 행위"(Fein, 1990)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 가운데 살인 행위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회의(Convention on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서 학살이 전쟁 중이건 평화시에 일어났건 간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학살(genocid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살상
- ②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
- ③ 특정 집단의 삶의 조건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계산하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일
- ④ 특정 집단의 출생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하는 일
- ⑤ 특정 집단이나 다른 지방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일

또한 모든 전쟁이란 곧 양측이 방어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대량학살과 전쟁을 구별하여 "국가와 여타 권력체가 '악'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의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양상"(Chalk and Jonasson)이라고 정의하여, 학살을 가하는 측에서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경제적

부를 획득하며 특정의 신조,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도연맹이나 부역자 색출과정에서의 학살, 11사단 등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비무장의 대항력이 없는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목적하에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이처럼 학살은 특정 종교, 인종, 종족, 민족집단의 부분 혹은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행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학살의 정의에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특정 집단을 전멸 혹은 파괴시키려는 '의도'(intention)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방 국가나 집단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일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살의 정의에 따라 한국전쟁을 전후로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의 행위를 가해자인 학살 주체와 피해자인 피학살자별로 학살의 양태를 규명해 보겠다.

① 학살 주체로 본 민간인학살

학살 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 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이들 각 주체별로 학살의 양태나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남한의 경우 피난민이 주된 대상이었고, 학살 행위는 주로 비행기의 기총사수였으며 때로는 노근리와 같이 직접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기총사격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시기적으로는 주로 전쟁 초기에는 전선 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전쟁 후반기는 북한지역에 집중하여 민간인학살이 이루어졌다. 북한 지역의 경우 점령기간인 40일 동안은 야만적이고 직접적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후반기에는 주로 북한 전역을 무차별 폭격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북한 주민에 대한 원접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민간인학살은 인종주의가 결합되어 상승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군은 전선과 비전선에서 학살을 감행하였다. 전선 학살의 초기에는 주로 남부전선에서 예비검속 등에 의해 좌익 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군경합동으로 학살을 저질렀다. 후기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제2전선 지역에서 11사단 중심의 유격대 토벌과정에서 거창 신원면과 같은 산간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들의 학살은 한국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사단의 작전 지시가 산간지역의 모

든 주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민간인학살은 구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었다. 비전선에서의 학살은 보도연맹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지역에 걸쳐 부역자나 공비 및 통비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무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특무대장인 김창룡은 '공산당 한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 열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학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부산지역에서 전 가구를 세 차례나 검속하여 수 만 명을 학살한 혐의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 역시 군과 같이 대부분 일제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으로 반공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군과 동일한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은 집단적 학살 못지 않게 개인적 수준의 학살이나 만행이 많았다. 물론 군경 모두 자의적 학살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는 이승만의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다.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2300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향토방위특공대(서중석, 1999:631), 1천여 고양 금정굴 학살을 주도한 우익학생 비밀결사체인 태극단, 경북 월성군 민보단장 이협우와 같이 민보단 등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자경단이나 치안단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들은 제주 4.3항쟁에서 서북청년단이 그 야만성과 무법성으로 악명을 떨친 것처럼 경찰과 군 못지 않게 학살을 저질렀다.

북한측의 학살 주체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정권기관, 빨치산, 지방좌익이다. 인민군 중심의 정권 기관은 북한 법에 의거하여 재판 절차를 밟아 반동에 대한 처형을 감행하는 절제된 형식이었다. 또 공식적으로 만행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과 재판 및 절제적 처형은 지켜지지 않았고, 형무소 및 유치장에 수감된 우익 반동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1,300명에 가까운 '반동분자'들에 대한 학살이다. 지방 좌익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학살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복감정에 치우쳐 인민군 진주 직후 보복학살을 주도했다. 빨치산도 토벌대에 비해 학살이나 만행을 자제하였지만 때로는 산간 마을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대조적인 차이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권기관 차원에서는 재판과 법 및 고문 금지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좌익이나 빨치산이 야만성과 비적법성을 오히려 더 노정시켰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공권력인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정규군 못지 않게 비적법성과 야만성, 조작성, 무차별성 등을 노정시켰다. 북한 측 학살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피학살자 수는 정부의 공식적 주장인 129,000명 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남한 정부나 비정규무장단체 의해 주도된 숫자보다 훨씬 적다.

② 피학살자 기준으로 본 민간인학살

피학살자는 평택 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으므로 20~25만에 이르는 가장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6.25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학살이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남한 내의 전반적인 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무소 수감자의 학살 또한 대전형무소 1,800명의 학살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고위층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그 숫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나 미결수를 포함할 경우 1~2만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학살 주체는 공권력인 군과 경찰이었다.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은 군과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김귀옥, 1999: 265). 이들 피난민은 불특정 다수로서 언제나 군과 경찰 및 비정규무장대의 부역 혐의자로 표적이 되어 무고하게 학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전선 지역 주민은 언제나 공비와 통비 및 부역혐의자로 몰려 학살에 내몰렸고 아예 11사단의 작전명령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로서 산간지역 주민들을 모두 통비로 보고 학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제2전선 주민들은 아마도 보도연맹원 학살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학살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 가족 등을 지칭한다(장미승, 1992: 191).

북한지역에서의 피학살자는 북한 전역에 걸친 불특정 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희생되었고 또 40일 동안 북한을 점령한 시점에서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혐의자였다.

이러한 민간 수준의 인명피해 밖에도 참전군인들의 피해 역시 심대하다. 이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위성년의 한국전쟁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유엔군이(대부분 남한군을 지칭함) 전사 628,833명, 실종 470,267, 부상 1,064,453명이고 미군은 전사 54,246명, 실종 8,177명, 전상 103,28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남한군은 약 1백만 가까이 전사 및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위에서 언급한 남한 주도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1백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인구의 12~15%가 감소한 것을 보면 약 1백만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전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약 36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학준의 추정은 남한이 군과 민을 합쳐 약 2백30만 북한이 약 3백30만, 중국군이 약 1백만명이 전사 또는 전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학준, 1989: 345~347).

3.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

1) 민간인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주민집단에게 안겨 준 상처와 후유증은 너무나 깊고도 컸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다.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당시 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인간이 야수로 돌변한 사실들을 정면으로 들추어내고 검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반문명적인 사태를 또 다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 남한의 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적 차별과 영호남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다름이 아니다. 수치와 오욕의 역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문제삼고 공론화를 해야만 그것을 올바로 청산할 길도 열린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일단 피해자의 관점과 인권 중심 사관에 입각점을 둘 것이 요청된다.

또한 학살을 명령하고 사주한 자, 지휘한 자, 적극 실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와 한도에서라도 역사적 책임이나마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혹시 불화와 갈등을 낳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적 화해와 통합에로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민간인학살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두면 다들 편한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꾸 떠드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을 그대로 묻어두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을 기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을 세 번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당시의 학살이 그러하며, 60년 4.19 직후 자연발생으로 일어났던 명예회복 운동과 묘지조성운동을 5.16 쿠데타 세력이 묘를 파헤친 것이 둘째이며,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한이 맷힌 일인데, 남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빨갱이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게 만든 것이 셋째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일은 근대 이전의 왕조체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또 이후 군사정권이 각 유족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군인들이 비석을 부수고 표를 파헤치며 개인묘로 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시대의 부관참시(副棺斬屍)에 버금가는 야만적인 행동이며, 유교문화권의 전통적인 효의 윤리의 기초인 자손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고 제사지내는 일도 막은 반윤리(反倫理)의 극치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관점과 정부의 대응

(1)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공적인 관점으로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건의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 해 왔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반체제 활동 모두를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 부치면서 틈만 나면 '마녀사냥'을 해왔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단연 일등 공신은 보수 정객들과 논객들이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둘째는 변혁적,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이른바 80~90년대의 운동권적 인식으로 이는 그 동안의 좌익활동에 대해 선형적 내지는 기계적인 파악의 귀결로서, 좌익 활동의 명분과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라리 민중의 역사라기 보다는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가져온 것이다.

셋째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단순하게 인적·물적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념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가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가와 폭력의 뗄 수 없는 관련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2)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의 이러한 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거창양민학살, 제주4.3의 예에서처럼 극히 일부 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형식적인 시늉에 그쳐왔다 하겠다. 이는 설령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된 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다는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민간인학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3) 민간인학살의 인권 및 운동의 성과 문제

(1)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

모든 형태의 전쟁 학살과 정치적 학살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과 같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주체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어야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고 재현되어 왔었다. 제주4.3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베트남 양민학살, 부마민중항쟁, 5.18광주 민중항쟁,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강경 진압사례는 가공스런 국가폭력이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맛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국가폭력의 사슬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이를 끊어야 한다.

한반도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신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민간인학살과 같은 엄청난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소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한반도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2) 사실규명과 운동의 성과로의 이행

또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제주 4.3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진상보고서 발표와 함께 지난 2003. 10.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과 제주

4.3연구소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문제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국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명예보상을 이루어 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중요한 한 흐름이었던 변혁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제주4.3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답은 없는 셈이다. 현재의 제주4.3이 전체의 모습을 그려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제주도라는 지역(민) 차원의 논의가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과 긴밀한 연대를 맺고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결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주4.3은 제주라는 특정지역의 사건으로 국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과 광주5.18 민중항쟁이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전주·정읍 일대와 광주에 국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현재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주 4.3의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사실규명인가, 명예회복인가, 보상인가? 이제는 제주 4.3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 부마민중항쟁, 광주5.18 민중항쟁에 대한 현재의 운동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같은 과거청산에 대한 언론의 자기비판 실종과 사실 왜곡에 대한 검증도 차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사대주의와 권언유착은 실상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왜곡언론의 주자인 조·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전 언론에 걸쳐 야기된 것으로서 비단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건 상황을 두고 언론은 이를 어떻게 왜곡하여 보도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증작업과 치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우리는 과거청산이라는 것이 국가가 조직적 혹은 계획적으로 저질렀던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해서 국가폭력과 범죄의 주체인 국가가 또 다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출발해야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거청산 작업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의 성

격에 직접 좌우되거나, 구 세력이 계속 정치 사회적으로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가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 등 남북 적대와 분단을 지탱했던 법, 제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도와 환경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책임성을 회溯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권력의 텁니바퀴 아래에서 대단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을 지나치게 매도하게 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청산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분열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과거청산이란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이 새 삶 논란이 되는 까닭은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에 따라 지난 날의 과오를 청산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뒤늦게나마 비로소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이란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일이다. 과거청산의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에 있으며, 이는 진실의 사회적 회복이다.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청산 작업은 그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 또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모아내는 일이다.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에 따라 잘못을 범한 당국이나 가해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회는 화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과거사의 정리일 뿐 아니라 국가 도덕성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와 같은 과거청산은 인류가 물리적인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는 현대 문명사회가 창안해 낸 지혜로운 방법이다. 과거사의 청산이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날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처럼, 예컨대 프랑스혁명 시기와 같이 수구와 개혁 세력간에 보복과 응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18, 19세기와는 달리 그러한 사회전환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세계사의 변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누차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 형식의 과거청산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남아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대표적인 과거청산 기구이다. 그 밖에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했던 중남미의 나라들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 분규 나라들에서 청산기구들이 설치 운영되었다. 또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정권의 독재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보고서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가해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악이나 심리적 문제점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야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며, 역사 정치적 환경(냉전, 반식민주의, 인종주의), 구성원이 복종함으로써 도덕적 자제력을 마비시키도록 하는 집단의 영향, 집단적 규범의 내면화,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언어들의 기여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 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4. 맷음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 민족 앞에 떳떳치 못한 친일세력이 극우 반공세력으로 변신해, 민족적 이익보다는 새로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와 맞물려 조직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반민족적, 반인권적 중대 범죄로 초현법적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테러리즘이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다. 인권의 고귀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일컬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학살의 역사적 사실 자체마저 또 다시 '학

살'했다. 학살사건의 본질과 책임은 철저히 은폐, 왜곡된 채 주로 좌익 측에 의한 우익 인사의 학살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고,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반세기를 침묵해야만 했다.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전쟁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야만적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국민 테러행위로, 결코 전쟁중의 불가피성에서 발생된 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전쟁중이라고 해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전쟁사의 교훈이고 제네바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평화와 인권협정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이것이 상실되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은 한국 인권론에서는 '실종된 원형의 복원'을 의미하는 일이 된다. 학살사건의 은폐된 진실과 전모를 밝히고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과거 학살사건 자체의 일회적 문제제기와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론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은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 정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다. 50여년 전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 진실을 말하고 반민족적 죄악에 대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해 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친일과 청산의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남과 북, 한민족 성원 전체의 민족적 과업이 되어야 하고, 또한 17대국회를 비롯한 범국민적 책무가 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의 민족적 극복은, 모순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고, '잊혀진 역사'를 '기억해야 할 역사'로 복원해 내는 작업이며,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시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사를 정립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과 인권'의 문제로서 학살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며,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국가기록물의 공개를 통한 사실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올바로 이끌어 갈 정책적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